

고 시

인천광역시고시 제2025-197호

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(1차) 및 복합사업계획변경(1차) 승인 고시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32호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407호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된 “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”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 및 제40조의8 규정에 의거 복합지구 지정 변경 및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7월 7일
인 천 광 역 시 장

1. 복합지구 지정 변경

가. 복합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
- 1) 명 칭: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
- 2) 위 치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4-1번지 일원
- 3) 면 적: 99,260.9㎡

나. 복합지구의 지정일: 2022년 2월 9일 (변경없음)

다. 사업의 종류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(변경없음)

라.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(변경)

구분	명칭	소 재 지	대표자 성명
(당초)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(만수동)	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
(변경)	인천도시공사 / (주)제물포역도심복합사업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(만수동)	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 / 대표이사 강정훈

마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<법률 제18311호>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: 2021년 5월 26일 (변경없음)

바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 (변경없음)
[인천광역시고시 제2022-51호(2022.2.25.)의 내용과 같음] : 게재생략

사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2. 복합사업계획 변경

가.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(변경)

- 1) 복합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- 2) 사업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(변경)

구분	명칭	소재지	대표자 성명
(당초)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(만수동)	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
(변경)	인천도시공사 / (주)제물포역도심복합사업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(만수동)	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 대표이사 강정훈

3) 사업시행기간 : 2022년 2월 9일 ~ 2031년 (변경없음)

나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다.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라.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마.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바.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사. 총사업비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4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과 주소 (변경없음)[인천광역시고시 제2022-51호(2022.2.25.)의 내용과 같음] : 게재생략

5.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6.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7.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8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: 아래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 관련 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- 비치장소 : 인천광역시 도시균형정책과(032-440-4469), 미추홀구 도시정비과(032-880-4757), 인천도시공사 도시정비처(032-260-5503), 현장사무소(032-886-8970)